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호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06

발의연월일: 2024. 8. 22.

발 의 자:윤호중·전용기·강준현

이학영 • 박홍배 • 박해철

이재관 · 황명선 · 허성무

문금주 • 정진욱 • 오세희

복기왕 · 임호선 · 김교흥

조계원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헌법 전문은 '우리 대한국민은 3·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·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,'라고명시하고 있음.

그러나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, 그 행위자가 독립운동, 역사 관련 기관의 장이나 장·차관직에 버젓이 임명되고 있음.

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, 반역사적 사태 라 할 수 있음.

이에 신문, 잡지, 방송, 그 밖에 출판물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

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이용,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·게시 또는 상영, 그 밖에 공연히진행한 토론회, 간담회, 기자회견, 집회,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·미화·왜곡하거나 찬양·고무·선전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·왜곡·날조한 자는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·발전시키려는 것임(안 제34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관장이 될 수 없다.
- 1. 신문, 잡지, 방송, 그 밖에 출판물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의 이용,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·게시 또는 상영,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, 간담회, 기자회견, 집회,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·미화·왜곡하거나 찬양·고무·선전한 사람
- 2. 신문, 잡지, 방송, 그 밖에 출판물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의 이용,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·게시 또는 상영,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, 간담회, 기자회견, 집회,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·왜곡·날조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결격사유) ① ~ ③ (생	제34조(결격사유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	해당하는 사람은 기관장이 될
	<u>수 없다.</u>
	<u>1. 신문, 잡지, 방송, 그 밖에</u>
	출판물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
	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
	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
	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, 전
	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
	시 또는 상영, 그 밖에 공연
	히 진행한 토론회, 간담회, 기
	자회견, 집회, 가두연설 등에
	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
	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
	죄를 정당화 · 미화 · 왜곡하거
	나 찬양・고무・선전한 사람
	2. 신문, 잡지, 방송, 그 밖에
	출판물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
	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
	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
	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, 전

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·게 시 또는 상영, 그 밖에 공연 히 진행한 토론회, 간담회, 기 자회견, 집회, 가두연설 등에 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 인·왜곡·날조한 사람